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 제2항제2호중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을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부지사”를 “사회복지국장”으로, “도기획관리실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충청북도 가정복지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하며 동조 제4항중 “충청북도 노인복지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가정복지국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노인복지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하며 동조 제2항중 “연합회 사무국장”을 “연합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